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04



국 토 교 통 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춘천댐-의암댐권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수년이 경과하고 하천간 기본계획수립시기가 상이하여 권역 내 일관성 있는 수리·수문량 검토가 필요하며, 하천개수사업 및 도시화, 기상변화 등으로 하도 및 수리·수문특성 변화를 고려하는 등 하천 관리운영상 미비점 보완이 시급함
- 본 과업은 춘천댐-의암댐권역 내 지방하천 6개소(131.20km)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작성하여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하천의 유지관리 등 수자원 종합 개발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춘천댐-의암댐권역 내 지방하천 6개소(131.20km)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개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해야 함

<표 1.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구 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기 능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구성주체	○ 협의대상 기본개발계획을 입안 또는 수립하는 관계행정기관
구성방법	○ 당해 행정계획 관계 전문가(환경단체 포함), 협의기관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 주민대표·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표 1.2-3>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발기본계획 제안 (관계 행정기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관계 행정기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또는 서면심의(30일 내 의견제출)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스코핑)	○평가법 제8, 11조 ○시행령 제4, 5, 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관계 행정기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후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평가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주민공람(20일~40일) 및 설명회 실시 - 신문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후 10일 이내 ○ 주민의견 제출(공람만료 후 7일 이내)	○평가법 제13조 ○시행령 제13, 14, 15조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계 행정기관)		○평가법 제16조 ○시행령 제21조
↓		
협의 요청 (관계 행정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평가법 제16조 ○시행령 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필요시 전문기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 현지조사 의뢰	○평가법 제17조 ○시행령 제23, 24조
↓		
협의내용 통보 (원주지방환경청 → 관계행정기관)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평가법 제18조 ○시행령 제25조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 2020. 11.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1. 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2021. 02. 17~2021. 03. 12)
- 2021. 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예정)
- 2021.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예정)
- 2022. 06.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예정)

1.4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및 화천군 일원
- 연 장 : 지방하천 6개소 총 연장 L=131.20km
- 계획수립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승 인 기 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협 의 기 관 : 원주지방환경청

1.4.1 계획내용

〈표 1.4-1〉 계획의 규모

번호	하천명	등급	위 치		연장 (km)
			시 점	종 점	
1	간척천	지방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음지촌 합류점	강원 화천군 간동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12.30
2	화천천	지방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장평동 합류점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국가) 합류점	29.20
3	파포천	지방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하집실 합류점	강원 화천군 화천읍 화천천(지방) 합류점	21.50
4	지촌천	지방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검단동 합류점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28.10
5	가평천	지방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적목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북한강(국가) 합류점	27.86
6	화악천	지방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경기도 가평군 북면 가평천(지방) 합류점	12.24
계			지방하천 총 6개소		131.20



(그림 1.4-1) 계획하천 위치도

1.5 계획의 기대효과

- 하천 유역의 현재와 미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을 조성
- 하천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하천정비와 유지관리, 보전계획 등 수립
- 수리·수문 특성변화와 하천 관리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 주변 하천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의 개선을 도모
- 하천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 극대화를 위한 이·치수,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 방향 수립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
-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 생활 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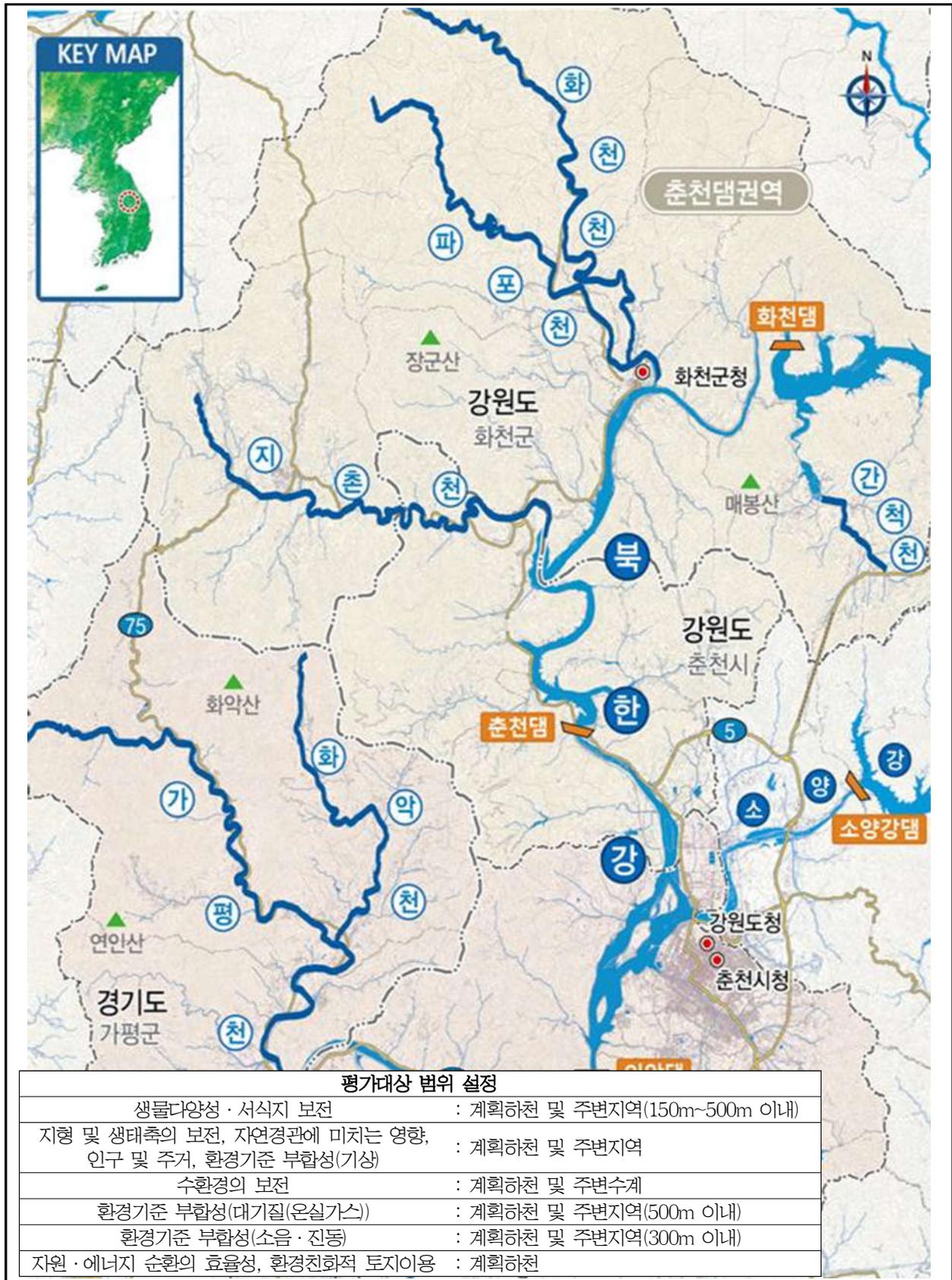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하천기본계획 시행으로 계획하천 주변에 대한 자연적 여건과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

〈표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대상지역	비 고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입 지 의 타 당 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해 수생 및 수변 식생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육상 및 육수동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환경관련 보호지역 등 자연환경자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u>(포유류, 조류 500m 그외 항목 150m)</u>	공사시 운영시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기본계획 구간 및 주변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유역별 오염부하량 검토 ○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 계획하천 및 주변수계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의 수리·수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수계	운영시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파악 ○ 대기질, 수질 등의 기초자료 활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질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건설장비 투입 등으로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u>(500m 이내)</u>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 계획시행으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공사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폐유 및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공사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시행으로 편입용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하천	운영시		
<u>인구 및 주거</u>	○ 계획 수립에 따른 인구 및 주거 변화에 따른 영향 지역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운영시		



(그림 2.1-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본 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및 화천군 관내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18-205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검토함
- 대안선정은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Action, No Action) 및 수단·방법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함

〈표 3.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계획 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 (Action)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 (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3.1.2 대안의 미선정 사유

- 본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상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 기타 등에 대한 대안선정은 제외하였으며, 미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3.1-2〉 대안의 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선정여부	미선정 사유
수요·공급	미선정	○ 하천기본계획과 재해예방사업으로 “수요·공급” 대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입지	미선정	○ 하천기본계획은 기 조성된 하천구역에 재해위험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획으로, “입지” 대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시기·순서	미선정	○ 하천기본계획 검토 후 홍수 등 재해위험의 발생이 높은 구역을 우선 순위로 정해 하천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기·순서” 대안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타	미선정	○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없음

3.2 대안의 설정

3.2.1 계획비교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2-1〉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

구 분	행정계획 수립 시(Action)	행정계획 미수립 시(No Action)
토지이용 측면	○ 계획시행 후 하천점용허가 재검토 등의 계획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이용상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무분별한 토지이용으로 이용효율성 저하 (토지이용계획상 변화 없음)
수자원 이용측면	○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증대	○ 계획되지 않는 하천계획으로 비효율적인 수자원이용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일부구간에 생태자연도 1등급 등이 위치하나,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 등으로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생태계훼손 가능성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생태계훼손 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생태계변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라 일부 지형 훼손이 예상되나,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지형 변화가 없으므로, 지형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을 정비하는 효과에 따라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효과가 예상됨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 침수 등이 예상됨
쾌적한 생활 환경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종전보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생활환경 변화가 없음(현 상태가 유지되나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환경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공사에 따른 경관변화가 예상되나, 주변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경관상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환경기준을 상회할 수 있으나, 공사시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대안선정	○ 홍수피해 예방 및 감소, 수자원 확보 및 하천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근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Action)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	-

3.2.2 수단·방법

- 수단·방법의 대안으로 홍수방어능력 향상 및 수질개선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
-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친환경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재해예방 및 양호한 하천생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표 3.2-2〉 수단·방법(이·치수 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에 따른 대안별 비교, 분석

대안	1안 (하천정비)	2안 (홍수조절지 조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산지, 농경지 및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에 제방, 보 등이 노후화되어 구조물의 정비가 필요함 ○ 홍수조절 능력 및 하천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호안 정비로 홍수에 대비함 ○ 하천 내 시설물 개선을 통해 하천수 이용을 도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시 발생하는 용수를 저장할 수 있는 홍수조절지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홍수에 대비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편입면적이 거의 없어 계획추진이 용이하고, 주변지역의 생태적 여건 변화가 적음 ○ 종합적인 하천정비로 홍수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편입면적이 필요함 ○ 유지관리가 필요함 ○ 홍수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사용
대안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산지, 농경지 및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어,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여건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함 ○ 계획하천 주변지역의 경우 하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용 빈도가 높지 않고, 홍수조절지 등의 추가개발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지며, 농경지 편입 등에 의한 계획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안과 같은 홍수저감대책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1안의 경우 기존 하천시설물의 보강으로 하천 이·치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며,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이·치수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1안으로 선정함 	
	○	-

<표 3.2-3> 수단·방법(하천수질 개선방법에 따른 대안)에 따른 대안별 비교, 분석

대안	1안 (친환경적 호안조성)	2안 (직접정화처리시설 설치)	3안 (하천변 인공습지 설치)
현황	○계획하천 주변지역은 산지, 농경지 및 주거지 등이 인접하고 있으며, 농경지 및 취락지역 생활하수 등으로 인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양호한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개요	○기존시설 보강으로 재해에 대한 대비가 가능	○하천변에 하천 직접정화 처리시설 설치	○하천변 인공습지 설치
사진예시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의 생태환경을 유지하여 자연정화 능력 향상 ○수질개선과 생물서식 공간 제공 ○추가 편입면적이 거의 없고 생태적 여건 변화가 적음 ○경관상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수 직접정화를 통한 가시적인 수질향상 효과 ○추가 편입면적이 필요함 ○시설관리·운영비 소모 ○주로 하수도정비 및 배출수 규제에 의해서도 충분한 개선효과를 인지 못하는 지역에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자정능력을 최대한 활용 ○수질개선과 동시에 생물서식 공간 제공 ○체류시간이 필요하므로 대안1, 2와 비교 시 편입면적이 가장 많이 필요 ○추가토지매입 필요 ○시설관리·운영비 소모
대안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하천의 경우 유역주변이 대부분 산림지역, 농경지 및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리적 조건, 생태계 특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을 검토함 ○계획하천 주변지역 주 오염원은 농경지 및 취락지역으로 계획하천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으며,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2안(직접정화처리시설 설치) 및 3안(하천변 인공습지 설치)과 같은 수질개선대책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안(친환경적 호안조성)의 경우 기존 하천시설물을 보강하고, 기존수변 식생대를 이용조성하여 자연정화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생태환경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음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질개선 및 양호한 생태환경 조성이 가능한 1안(친환경적 호안조성)으로 선정함 		
	○	-	-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지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4.1-1〉 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선정결과

구 분		선정사유	비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적정성 검토 필요 ○환경관계법상 환경보전시책 부합여부 및 입지규제 저촉 여부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수립, 하천정비, 수질개선 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계획시행 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계획시행 시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의 변화 예상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인한 하천 지형변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시행으로 계획하천 및 주변 경관 영향 예상	
	수환경의 보전	○계획시행으로 부유토사, 비점오염원 발생 및 저감방안 수립 ○홍수량, 홍수위 검토를 통한 치수 안전성 부합여부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파악 후 기초자료 활용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비산먼지, 대기 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건설장비 가동, 차량운행 시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영향검토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계획시행 시 하수종말처리장 등 현황 및 영향여부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시행 시 폐기물 발생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시행 시 토지이용변화 예상	
	인구 및 주거	○계획시행 시 인구 및 주거 변화 예상	

4.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현황은 문헌자료와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 시 파악된 계획하천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성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 본 계획에 따른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4.2-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 분		조사계획	예측 및 평가방법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자연(식생현황 및 동식물 서식환경 등) 및 자연환경자산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주 ○ 조사방법 : 자료(광역) 및 현지조사(2회) 병행(조류조사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자료,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특이지형 등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에 따른 하천 지형변화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자원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검토
	수환경 의 보전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하천수질 및 하천저질 현황, 오염원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인근 수계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조사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수질 : 44지점 × 3회 - 하천저질 : 44지점 × 1회
수리· 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하천의 수리·수문 여건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인근 수계 ○ 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여건 변화 검토

<표 4.2-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 분		조사계획	예측 및 평가방법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기상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분석·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연보 등 자료분석을 통해 대기질 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온실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기오염원 및 정온시설 분포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500m 이내) ○ 조사방법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원 및 정온지역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주변 소음현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정온시설 분포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300m 이내) ○ 조사방법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소음현황 및 주요발생원, 정온시설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 시 폐기물 발생 검토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검토
	인구 및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내용 : 인구 및 주거 현황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 변화 검토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 (포유류, 조류 500m 그외 항목 150m) 하였으며, 각 계획하천의 하류하천과의 합류부 또는 북한강 합류부근 (약 100m 정도) 을 포함하여 조사하겠음(횡단방향 주변지역 150m 포함)

4.3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4.3-1> 환경질 현황 조사계획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횟수	수량
하천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 BOD, COD, DO, SS, TOC,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총대장균군, PCE, 수은, 유량, 사염화탄소 등 22개 항목 	44개 지점	3회	132
하천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 T-N, T-P, Cd, Pb, As, Ni, Hg, Cr⁺⁶,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등 13개 항목 	44개 지점	1회	44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1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 본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계획임

〈표 5-1〉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

관 련 법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원주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평가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을 이용하여 14일 이상 공개할 것임

5.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신문공고, 현수막 설치, 마을방송, 마을이장(통장)을 통한 홍보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표 5-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 분	내 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 또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보통신망
 - : 공고·공람 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 : 공고·공람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관할 시·군·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시·구청,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나.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은 평가대상지역 관할 지자체와 협의·결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다. 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략 시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생략공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

제6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15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1년 02월 17일 ~ 2021년 03월 12일
-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협의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 결정사항 : 대상지역 설정, 토지이용 구상안 및 대안 설정,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구 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이 ○ ○	승인기관
2	위 원	남 ○ ○	계획 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3	위 원	김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4	위 원	박 ○ ○	협의기관장 지명 공무원
5	위 원	노 ○ ○	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
6	위 원	박 ○ ○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7	위 원	안 ○ ○	협의기관장 지명 민간전문가
8	위 원	박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9	위 원	김 ○ ○	
10	위 원	권 ○ ○	
11	위 원	서 ○ ○	주민대표 (지자체 추천, 위원장 위촉)
12	위 원	정 ○ ○	
13	위 원	김 ○ ○	
14	위 원	이 ○ ○	시민단체 (지자체 추천, 위원장 위촉)
15	위 원	김 ○ ○	



국토교통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협의회 개최(변경) 알림(춘천댐-의암댐권역)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변경 구성·운영
하고자 합니다.

- 가. 건 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 나. 인 원 : (당초) 위원장 등 13명 → (변경) 위원장 등 15명
- 다. 심의일정 : (당초) '21.2.17.(수) ~ 3.5.(금) → (변경) '21.2.17.(수) ~ 3.12.(금)
* 평가준비서 배포 및 사전설명은 해당 용역을 수행중인 용역사에서 방문설명 예정
- 라.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마. 심의안건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준비서 심의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계획(변경) 1부. 끝.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평가과), 춘천시청(환경정책과장), 화천군수(환경과장), 가평군수(환경과장), 강원대학교 박준석 귀하, KEI 환경평가본부(자원에너지평가실 노태호 귀하, 춘천시 주민대표 서용석 귀하, 화천군 주민대표 정태환 귀하, 가평군 주민대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김영복 귀하, 가평군엔지니어링협의회 이상운 귀하,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택희 귀하, 한경대학교 안태진 귀하

주무관 하천공사과장 대결 2021.2.19. 하천국장 전결

협조자

시행 하천공사과-372 (2021. 2. 19.) 접수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반곡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http://www.molit.go.kr/wrocm>

전화번호 033-769-5692 팩스번호 033-744-8473 / park54go@molit.go.kr / 비공개(5,6)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그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알림 공문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은 다음과 같음

〈표 6.2-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의견

구분	위원	심 의 의 견	비고
□ 총괄의견			
총괄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현황, 하천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치수 계획 및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 및 하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등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하여야 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경기도 가평군 일원의 가평천, 화악천 외 4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하천의 이·치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해야 함.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별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이므로 통합적 물관리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상위계획으로서의 상세함과 위상이 제고되어야 함 - 따라서 국가 및 각 지방하천별 관리를 위한 10년 기간의 법정계획이므로 하천별 상세한 현황과 보전시책, 시설계획 및 시설물 관리대장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본 평가서는 강원 화천군 및 경기 가평군에 분포하는 6개소의 지방하천의 법정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지방하천의 중요성을 소하천 수준으로 간과한 측면이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은 각 지방하천별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여 재작성하고,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하천에 한하여 유역개념을 적용하여 타 하천과 함께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구분	위원	심 의 의 견	비고
총괄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관 정책과 조화를 고려한 환경보전적 법정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고 치수관리를 위한 통수단면의 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바,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특히 한강유역 상류수계역 인바, 과도한 축제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지양하고 이를 감소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10년 단위 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설계 빈도를 특정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설계빈도별 영향 및 적정성을 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명시하여 치수 및 하천관리 방안의 수립을 위한 적정 대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야생생물보호구역, 상수원수질대책지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분포하천, 생태자연도 1등급지, 주요 능선축, 자연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의 보 및 낙차공 철거 방안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 또한 대상 하천의 저질오염도를 평가하여 필요시 요구되는 조치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표수질 설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폐기물 발생량을 성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출 및 처리 내용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래의 몇 가지 의견에 대하여 검토 바람.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정비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에서는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물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각 중점 평가항목에 관한 현황,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총괄	박○○	• 춘천댐-의암댐 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 계획수립으로 인한 계획지구 및 주변에 대한 자연생태,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김○○	• 다목적댐을 평가대상지역에 추가하여야 함.	
	정○○	• 동일권역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기본정비계획과 연계검토 요망.	
	이○○	•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검토 및 하천퇴적지에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여 수립을 검토하여야 함.	
	김○○	• 평가준비서 상의 큰 틀의 조정없이 진행 가능하다 판단되며, 일부 수정의견을 잘 반영하여 진행할 것을 희망함.	
□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			
1. 평가대상 지역의 설정	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13.01)을 고려하여 육상·육수 생태계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함.	
	김○○	• 대상지역 설정은 해당 하천의 유역 범위 내 지류 소하천 현황, 해당 하천의 자연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설정하여야 함. -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 -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구간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 -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	
		• 대상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함.	
	박○○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중점지역) 범위는 생태계의 연결성(생태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기상 현황(주풍향 등) 및 주변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1. 평가대상 지역의 설정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비교적 적절히 설정되었으나 아래의 항목 추가가 필요 없겠는지 검토 바람. - (p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주변지역 영향반경 300m 이내로 수정검토 - (p11) 환경기준부합성 항목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토양오염 예상지역 추가여부 검토 - (p11)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가여부 검토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인 동·식물상은 각 계획하천의 하류하천과의 합류부 또는 북한강 합류부근 (약 100m 정도)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횡단방향 주변지역 150m 포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항목에 따른 평가대상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조사범위 기준으로 변경 설정하시기 바람.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천을 금번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함. - 다목천은 다목리 수피봉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 상서면 봉오리 파포천 우안으로 유입되는 14.2km의 지방2급 하천으로 금번 계획 대상인 파포천과 화천천의 상류에 위치함. 2001년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20여 년이 지났음. 연계된 다목천, 파포천, 화천천 3개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우강도 및 빈도를 고려하여 홍수시 침수지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내 축사 및 기타 오염원에 대한 선정 기준 보강 요망. ※ 해당지역 내 분뇨처리장 처리기능(총량 등) 	
2. 토지이용 계획안 (대안)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수문 분석, 하천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계획을 검토수립하여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의 이·치수적 측면과 자연·생태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 통과·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 -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 - 홍수 및 수해 피해 등을 고려한 수충부 구간 중심의 하천공사 시행 - 호안 조성 시 사후 식생 도입이 가능한 공법을 적용하고, 법면경사는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 - 인위적 구조물로 인한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저해 요인 개선 * 보 등 기존 시설물의 기능 재검토를 통하여, 기능 저하 또는 상실된 구조물 철거 등 -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하천변 식생대 조성, 하천정화활동 등) 강구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2. 토지이용 계획안 (대안)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수지구의 설정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함. - 초안 작성 시 해당 구역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제시하고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제시 - 하천 합류부 및 생태적 연결성이 건강한 지역의 친수지구 설정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방 및 호안정비 계획은 계획홍수위·하폭·제방높이를 검토하여 통수능력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립하고, 자연하천 구간은 최대한 보전하는 등 불필요한 공사 계획은 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기본계획의 목적, 기대효과, 하천별 유역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계획·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 및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하천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 - 하천 내 생태·경관 현황, 하천변 시설물 설치 및 주민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대안 설정·제시 - 하천공간관리와 관련하여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과 금회 수립하는 계획을 비교·제시하고, 친수구역의 경우 지정사유 및 근거 자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징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기존 수계,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상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식생이 발달된 구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치수의 안정성 범위 내 정비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보전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및 보축 등에 따른 시설물(호안 등) 설치 계획 시 하천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생도입이 우수한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들을 조사·비교하고, 선정된 호안공법에 대한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제방 및 호안은 야생동물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비탈면은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하고 사면처리는 친환경공법으로 계획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2. 토지이용 계획안 (대안)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또는 낙차공은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준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 및 준치 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이를 최소화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 내 하상정리, 굴착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하상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41) 현상태 유지시와 계획수립시로 구분하여 수요·공급 대안 비교검토.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의 구체적인 시설물 개선 및 보강계획의 반영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제3호에 따라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도에 토지이용 구상안을 제시하시기 바람.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제방위주의 선적인 홍수방어 개념을 유역 전체 차원의 면적 홍수 방어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됨 •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 피해의 발생이 연속적 반복되는 구간 - 하천의 급류지역이나 곡선 반경이 큰 롤링 게이트 곡면 •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한 단면에서 물이 수로의 벽면과 접촉하는 길이 윤변을 넓게 하여 홍수 피해의 발생이 연속적 반복되는 구간의 홍수 단면을 키워 유속을 줄여주는 방안 검토 - 환경 피해와 파괴의 최소화 -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홍수단면 확보를 위한 토지의 친환경 면적 확보 	
3. 평가 항목·범위 ·방법 등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합성을 검토하고 이·치수적, 환경·생태적 입지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에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통한 적정 환경보전방안의 수립이 요구됨.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여야 함. -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여건,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구분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 계획구간 주변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야생생물 출현여부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야 함 - 문헌조사 시 “겨울철조류 동시센서스(환경부)” 자료를 포함하고, 현지조사 시 평가범위는 300m 이상으로 설정(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서식지 및 활동범위까지) - 자연생태환경 현지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조사시기(식물, 식생,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등)에 따라 실시(겨울철새 등 동절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절기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영향에 측 및 보전·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구간 중 생태자연도 1등급지, 야생동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하는 경우(이격거리 제시), 영향여부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환경부 훈령 제1161호, '15.7.17) - 생태계교란 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소음·진동 - 대기질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최소 500m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제시된 항목 모두 측정·분석 (PM-2.5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리·수문 - 하천별 철저한 수질조사 및 원인분석, 비점오염원 유입 현황조사를 통해 하천수질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2회 이상 수질조사(갈수기·평수기·홍수기 등)를 실시하되, 조사지점 및 횡수 등은 주변환경, 하천특성, 연장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정 • 계획구간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하천(화천천, 파포천)은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하천별로 규모(하폭, 유역면적 등) 및 인접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설계빈도 등을 산정하는 등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3. 평가 항목·범위 ·방법 등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예측하여 사업 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 수립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에 따라 영향분석을 면밀히 실시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고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 조사 횟수, 지점·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개선방안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공간환경 관리계획(지구지정)은 계획하천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 설정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므로,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보존, 후 치수”의 기본개념에 기초한 대안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을 위해 하천구간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구역을 보존, 복원, 치수 등의 용도별로 지정하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특정 빈도의 일률적인 치수계획의 수립으로 이들의 공간역이 훼손되거나 할 경우, 적용 빈도를 낮추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 보존 후 치수”를 위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 적용 기법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안공법으로 석재료(자연석 쌓기, 식생옹벽, 석축쌓기 등) 등의 적용을 지양하여야 함. 하천역의 경우 최상류역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호안을 이루는 곳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고 하천구역의 준위에 따라 자연적 경관성이 적합한 호안공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횡적 수직 단차를 유발을 지양하여야 함 - 종적인 수직단차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연친화적 기법 적용, 상위 규모의 하천역과 합류되거나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구역은 횡적 시설물에 의한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 대안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포함/인접한 하천역의 경우 산림역과 연계된 호안은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형보전 구간을 설정,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 파악은 10년간 적용될 장기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이므로 하천개황 및 식생, 담(해)수생물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의 경우 소산식물 및 출현 동물상 목록을 작성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 명기 - 해안역에 인접한 하천역에 해당하는 바, 기수역의 범위와 소하성 어류 분포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하천 습지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p>3. 평가 항목·범위 ·방법 등</p>	<p>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 중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이 연계되어 있는바, 수변식생 원형보존, 보/낙차공 철거 등의 사업계획과 함께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별도로 수립·제시하여야 함(해당구간에 유입 또는 연계된 중요 소하천 현황 및 개수계획을 생태자연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및 낙차공 등 시설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차공 또는 보는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존치 및 재가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 및 존치목적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이를 지양하여야함 -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 노후 되었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낙차공은 철거하여 유수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적 구조물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하천 연속체 기능을 저해하는 횡적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총괄 내용 참고) 내 보 및 낙차공 철거 방안 및 평가결과 제시 · 1km당 1개 이하의 규모로 계획 수립을 적극 고려하여 존치 및 재가설을 최소화한 결과 제시 · 어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보 및 낙차공 현황사진 및 시설물 대비 어도설치 비율 제시 · 존치 및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철거 및 축소 조정안(철거 비율 명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가능 대상 시설물 개소수 분석, 제시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유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하천역에는 하상의 준위를 낮추고 소(꺾)를 형성하여 좁으므로써 인공적 구조물의 보강 및 재가설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 ※ 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어도 등 육수생물상의 분포구배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계획빈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하천과 인접한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 하천설계 빈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교란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평가 ※ 현재 국가하천(100~200년 빈도), 지방하천(50~100년 빈도), 소하천(30~100년 빈도) 등 하천등급별 설계빈도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상 하천의 규모(유역면적 및 하천연장) 및 홍수량을 고려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3. 평가 항목·범위 ·방법 등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시설물 정비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정량적인 처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성상, 종류, 양을 사전에 예측하여 발생단계에서 분리·배출 및 수집·보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증설/재설치, 철거 계획이 확정된 교량, 낙차공 및 보 등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성상, 종류별로 산정하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참고하여 위탁처리에 따른 소각, 매립, 재활용량을 정량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개선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수질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중·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참조하여 목표수질 설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및 대책(흐름 정체구역의 해소, 완충공간 확보 등)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 및 정비우선순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구간 중 풍수해위험지구, 수질오염관리 필요 지역, 인구밀집지역 등과 인접한 하천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환경적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수해피해 발생 당시의 홍수량 및 홍수위, 피해 범위와 규모, 기존 호안상태 등을 조사하고,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 하천재해복구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거 항목 추가하여야 함(“4. 주민의견 수렴” 참조)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5-2>와 <표 5-3> 항목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49) 환경기준부합성 항목 중 토양 추가 필요시 본 항목별 조사·예측에도 ‘토양’ 추가 - (p49)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중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가 필요시 본 항목별 조사·예측에도 ‘온실가스’ 추가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조사는 4계절을 반영하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2회 현지조사 계획) 문헌조사를 충실히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조사는 44개 지점/6개하천에 3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 바, 하천의 갈수기, 저수기 및 평수기에 유량을 측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되는 호안공은 미생물의 이동이 용이한 공법인지의 검토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예상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방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박○○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항목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각 항목별 조사시기를 고려하여 현지조사 횟수를 조정하시기 바람.	
		• 하천수질(저질) 조사지점 선정의 타당성 및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권○○	• 가평천의 경우 하절기 하천이용 행락객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수질조사시 계절별 특성을 반영하기 바람.	
	정○○	• 수리·수문 - 기상관측, 재난보고서 및 문헌 등을 활용하여 하천별로 과거 10년 이상에 대한 과거 홍수기록, 재해피해기록(침수, 범람, 제방붕괴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이○○	• 토사 퇴적지 및 댐 주변 퇴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 검토가 필요함.	
	김○○	• 각 하천의 북한강 합류지점에 대한 환경 적합성에 대한 기준 필요. ※ 각 하천의 북한강 합류지점에 대한 독립된 평가 기준이 필요	
4. 약시평가 가능여부	이○○	• 종합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요소 제시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남○○	• 환경영향 대상지역 내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김○○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람기간 선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공람기간 20일 이상)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 추가 홍보(안) :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	
	박○○	•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	

구 분	위 원	심 의 의 견	비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지식을 활용한 계획 수립 - 본 계획은 치수기능 향상의 일환으로 홍수소통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계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거 홍수로 인한 수해 관련 고유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서면조사 혹은 면담을 통해 수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지식을 조사하고 이것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들이 초안 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이해하도록 자세하고 세부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포천, 화천천, 간척천 등의 지역 방문 결과 원주민들은 기본계획과 다른 계획의 진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희망함. 	
6. 기타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 범정보호종, 환경질 현황 등에 관련 문헌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현행화 및 도면 등은 육안판독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도면 등은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확대,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범례를 명시, 환경현황 측정지점을 명확히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현황조사 시에는 법적 환경기준에 맞게 조사·분석하여야 하며(대기질, 수질, 저질, 소음·진동 등), 조사항목, 지점, 주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는 본 심의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계획과의 부합 및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계획에서 검토된 내역을 참조·인용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금번 계획의 홍수량(홍수위)을 비교하여 금회 계획에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 등을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상 시설물 계획과 비교·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구분	위원	심의의견	비고
6. 기타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여야 함. - 하천과 관련된 계획임을 감안, 공사시행으로 인한 탁수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 검토·제시 	
	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골재 채취계획 여부 평가 및 반영 - 본 권역의 하천기본계획 운영 기간 중 계획된 하천골재 및 수변골재 수급계획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 허가된 하천골재 채취에 관한 사항(구간, 채취량, 채취기간 등)을 비교 가능토록 연도별 현황을 명시 · 국가 및 광역지자체 골재수급계획을 고려한 향후 계획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및 분석 자료의 가독성 확보 - 각종 필요한 도면(조사지점 및 경로, 식생도, 집수역 수계분포 현황,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중요종 출현분포도 등)은 획득 가능한 가장 상세한 지형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에 투명지를 이용하여 명확히 중첩·표기하되, 각 지점에 대해서는 좌표를 명시하여야 함(가독성을 확보할 것) 	
	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황 조사내용에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내용과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사항을 포함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따른 대상지역의 지형·지질현황 및 특이지형 등의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전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첨부하여 춘천시 환경정책과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협의 요청(문서)을 하여야 함.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의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승인) 이후에 사업추진 가능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촌천은 갈대숲으로 인하여 고라니, 멧돼지의 서식처가 되어가고 있어, 갈대숲 제거를 희망함.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사업은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특히 하천의 기본적인 유량과 홍수에 대비한 충분한 유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 사후복구 위주로 책정되어 있는 재해예산을 예방투자 분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해 예방사업의 투자는 사후복구 사업에 비해 몇 배의 사업 효과가 있으므로, 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요망.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계획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현황, 하천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지수 계획 및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선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환경영향평가 평가법의 설정 가이드라인(13.01)을 고려하여 육상·육수 생태계 연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검토하여 설정하여야 함</p> <p>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 수리·수문 분석, 하천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계획을 검토·수립하여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함</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부합성을 검토하고 어지수적, 환경·생태적 입지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함</p> <p>○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에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통한 적정 환경보전방안의 수립이 요구됨</p> <p>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 환경영향 대상지역 내 주민의 적극적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함</p> <p>6. 기타</p> <p>○ 동식물상, 범람보호조, 환경질 현황 등에 관련 문헌자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right;">2021. 3.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와 과 남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 개요</p> <p>○ 위치 및 규모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번호</th> <th rowspan="2">하천명</th> <th colspan="2">위 치</th> <th rowspan="2">연장(km)</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시 점</th> <th>종 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관학천</td> <td>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읍지촌 합류점</td> <td>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복한길(국가) 합류점</td> <td>12.50</td> <td>-</td> </tr> <tr> <td>2</td> <td>회천천</td> <td>강원도 원주시 삼서면 다천리 장왕도 합류점</td> <td>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td> <td>29.20</td> <td>-</td> </tr> <tr> <td>3</td> <td>파포천</td> <td>강원도 원주시 삼서면 봉오리 하참실 합류점</td> <td>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td> <td>21.50</td> <td>-</td> </tr> <tr> <td>4</td> <td>지촌천</td> <td>강원도 원주시 사서면 광덕리 감당도 합류점</td> <td>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td> <td>26.10</td> <td>-</td> </tr> <tr> <td colspan="2">소 계</td> <td colspan="2">지방하천 총 4개소</td> <td>91.10</td> <td>-</td> </tr> </tbody> </table> <p>○ 근 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 제2호 자목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p> <p>○ 사업시행자(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p> <p>1 총괄</p> <p>○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 및 하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13.1)」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함.</p>	번호	하천명	위 치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1	관학천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읍지촌 합류점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복한길(국가) 합류점	12.50	-	2	회천천	강원도 원주시 삼서면 다천리 장왕도 합류점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29.20	-	3	파포천	강원도 원주시 삼서면 봉오리 하참실 합류점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21.50	-	4	지촌천	강원도 원주시 사서면 광덕리 감당도 합류점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26.10	-	소 계		지방하천 총 4개소		91.10	-
번호	하천명			위 치				연장(km)	비고																														
		시 점	종 점																																				
1	관학천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읍지촌 합류점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복한길(국가) 합류점	12.50	-																																		
2	회천천	강원도 원주시 삼서면 다천리 장왕도 합류점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29.20	-																																		
3	파포천	강원도 원주시 삼서면 봉오리 하참실 합류점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21.50	-																																		
4	지촌천	강원도 원주시 사서면 광덕리 감당도 합류점	강원도 원주시 강동면 관학리	26.10	-																																		
소 계		지방하천 총 4개소		91.10	-																																		
<p style="text-align: center;">계획 수립기관 소속 공무원</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 소속 공무원(1/6)</p>																																						
<p>2 세부심의의견</p> <p><input type="checkbox"/>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p> <p>○ 대상지역 선정은 해당 하천의 유역 범위 내 지류 소하천 현황, 해당 하천의 자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설정하여야 함.</p> <p>- 하류 합류점, 지류 소하천과의 연계성(계획용수량, 계획용수위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 설정</p> <p>-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구간 및 그 주변지역에 개발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을 경우 이를 대상지역에 포함</p> <p>- 지형·지질, 동·식물상, 대기질, 소음·진동, 수질, 수리·수문 등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최대한 확대·설정</p> <p>○ 대상지역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도면에 표기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토지이용 구상안</p> <p>○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의 이·치수적 측면과 자연·생태환경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p> <p>-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 통과·인접구간 내 시설물 설치물 지양하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 구간은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안 강구</p> <p>- 하천 본래의 유로, 하폭 및 하상을 최대한 보전하고, 수리·수문 분석 및 제내지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정비계획 수립</p> <p>- 홍수 및 수해피해 등을 고려한 수송부 구간 중심의 하천공사 시행</p> <p>- 호안 조성 시 사후 식생 도입이 가능한 공법을 적용하고, 범람경사는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p> <p>- 인위적 구조물로 인한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저해 요인 개선</p> <p>- 보 등 기존 시설물의 기능 저점도를 통하여, 기능 저하 또는 상실된 구조물 철거 등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하천변 식생대 조성, 하천정화활동 등) 강구</p>	<p>○ 친수지구의 설정은 배후지역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 한정하여 최소화하여야 함.</p> <p>- 초안 작성 시 해당 구역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사진 및 도면을 제시하고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제시</p> <p>- 하천 합류부 및 생태적 연결성이 건강한 지역의 친수지구 설정 지양</p> <p>○ 제방 및 호안정비 계획은 계획용수위·하폭·제방높이를 검토하여 통수 능력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립하고, 자연하천 구간은 최대한 보전하는 등 불필요한 공사 계획은 지양</p> <p><input type="checkbox"/> 대안</p> <p>○ 하천기본계획의 목적, 기대효과, 하천별 유역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계획·비교하여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 및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p> <p>- 하천 설계빈도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p> <p>- 하천 내 생태·경관 현황, 하천변 시설물 설치 및 주민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의 대안 설정·제시</p> <p>- 하천공간관리와 관련하여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과 급히 수립하는 계획을 비교·제시하고, 친수구역의 경우 지정사유 및 근거자료 제시</p> <p>○ 각 대안은 비교·검토가 가능한 통합자료(대안별 도면 및 사업내역 비교표 등)와 대안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자료(사업내용 및 주요 대안별 환경적 특점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선정</p> <p>1. 평가 항목</p> <p>○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하여야 함.</p> <p>-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여건,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구분·선정</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 소속 공무원(2/6)</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 소속 공무원(3/6)</p>																																						

(그림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본

<p>2. 평가범위·방법 등</p> <p>○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구간 주변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법정보호종을 포함하여 야생생물 출현여부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야 함 - 문헌조사 시 “겨울철조류 동시생존지(환경부)” 자료를 포함하고, 현지 조사 시 평가범위는 300m 이상으로 설정(법정보호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시지 및 활동범위까지) - 자연생태환경 현지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의 조사시기(식물, 식물, 조류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어류 등)에 따라 실시(겨울철에 등 동절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절기 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보전·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계획구간 중 생태자연도 1등급지, 야생동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하는 경우(이력거리 계산), 영향 여부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 ※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참조(환경부 훈령 제 1161호, '15.7.17) - 생태계교란 생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p>○ 대기질, 소음·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최소 500m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제시된 항목 모두 측정·분석(PM2.5 포함) <p>○ 수질 및 수리·수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별 철저한 수질조사 및 원인분석, 비점오염원 유입 현황조사를 통해 하천수질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수질조사(강수기·평수기·홍수기 등)를 실시하되, 조사지점 및 횟수 등은 주변환경, 하천특성, 인장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선정 - 계획구간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하천(하천권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 - 사업계획 수립 시 계획하천 별로 규모(하류, 유역면적 등) 및 인접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설계면도 등을 산정하는 등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p>○ 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시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훼손여부를 검토·예측하여 사업 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비교 예측하여 저감방안 수립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권관리의 지침」에 따라 영향분석을 면밀히 실시 <p>□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람기간 선정 시 공·휴일은 제외하고,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충분히 홍보(공람기간 20일 이상)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 추가 홍보(안) :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방송 등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현황화 및 도면 등은 육안판독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도면 등은 육안판독이 용이하도록 충분히 확대, 색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명제를 명시, 환경현황 측정지점을 명확히 표시 ○ 환경 현황조사 시에는 법적 환경기준에 맞게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대기질 수질 저음·진동 등), 조사항목, 지점, 주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 4 -</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4/6)</p>	<p style="text-align: center;">- 5 -</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5/6)</p>
<p>○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p> <p>○ 사업자는 본 심의의견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2. .</p> <p style="text-align: center;">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김 []</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 6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p> <p style="text-align: center;">[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경기도 광역군 일원의 광역권, 좌안권 외 4개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하천의 이·취수 기능뿐만 아니라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해야 함 <p>□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역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중점지역), 범위는 생태계의 연결성(생태축)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기상 현황(주풍향 등) 및 주변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의 기존 수계, 선형 및 구배를 최대한 유지하고 하상구조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는 등 자연성을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3. 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식생이 발달된 구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위치·인접한 구간은 이·취수의 안정성 범위 내 경비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형보전하는 등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 축제 및 보축 등에 따른 시설품(호안 등) 설치 계획 시 하천생태계 복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식생도입이 우수한 환경친화적인 호안공법들을 조사·비교하고, 선정된 호안 공법에 대한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방 및 호안은 야생동물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비탈면은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하고 사면처리는 친환경공법으로 계획 ○ 보 또는 낙차공은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과를 저해하므로 존치 및 제거설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 및 존치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이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하도 내 하상정리, 굴착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생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하상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div>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6/6)</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장 지명 공무원 (1/2)</p>

(그림 6-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본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고 생유·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 조사 횟수, 지점·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수질) 계획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 개선방안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토지이용) 하천 공간환경 관리계획(지구지정)은 계획하천에 대한 향후 관리방향 설정의 기본적인 지침이 되므로, 하천 구간별 생태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제시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방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 <p>6.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계획과의 부합 및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계획에서 검토된 내역을 참조·인용 시에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과 급변 계획의 홍수량(홍수위)을 비교하여 급변 계획에 신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 필요성 등을 기수립된 하천기본계획상 시설물 계획과 비교·제시하여야 함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제시하여야 함 - 하천과 관련된 계획임을 감안, 풍사사생으로 인한 탁수영양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목표 설정 검토·제시 <p style="text-align: center;">2021. 3. 12. 심의위원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박 [redacted]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검토의견 (사업명: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별 기본계획 수립 및 작성 -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이므로 통합적 관리의 측면에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상위계획으로서의 상세함과 위상이 계고되어야 함 - 따라서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10년 기간의 법정계획이므로 하천별 상세한 현황과 보전시책, 시설계획 및 시설물 관리대상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본 평가서는 강원 화천군 및 경기 가평군에 분포하는 6개소의 지방하천의 법정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지방하천의 중요성을 소하한 수준으로 간과한 측면이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수립함을 원칙으로 하여 제작성하고,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하천에 한하여 유역개념을 적용하여 타 하천과 함께 작성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인과 정책과 조화를 고려한 환경보전적 법정계획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정책 또는 환경보전시책과 부합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담고 있고 치수관리를 위한 통수면의 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바,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특히 한강유역 상류수계역 인바, 과도한 축제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지양하고 이를 감소하여 하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 10년 단위 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하천의 설계 빈도를 특정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설계빈도별 영향 및 적정성을 평가를 실시한 자료를 명시하여 치수 및 하천관리 방안의 수립을 위한 적정 대안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야생생물보육구역, 상수원수질대책지역, 수변구역, 수산자원보육구역, 환경보전해역, 상수원보육구역, 습지분포하천, 생태자연도 1등급지, 주요 능선축, 자연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의 보 및 낙차공 절거 방안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 또한 대상 하천의 지질요인도를 평가하여 필요시 요구되는 조지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장 지명 공무원 (2/2)</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1/5)</p>
<p>리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표수질 설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발생량을 성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출 및 처리 내용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p>□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견없음(V), 수정의견() 2. 토지이용계획: 의견없음(V), 수정의견()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없음(V),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보존, 후 치수」의 기본개념에 기초한 대안의 설정 -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해 하천구간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구역을 보존, 복원, 친수 등의 용도별로 지정하는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특정 빈도의 인공적인 치수계획의 수립으로 이들의 공간역이 훼손되거나 할 경우, 적용 빈도를 낮추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 보존 후 치수」를 위한 기본 개념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 호안 적용 기법 대안 - 호안공법으로 석재(자연석 쌓기, 식생영벽, 석축쌓기 등) 등이 적용을 권장하여야 함. 하천역의 경우 최상유역을 제외하고 자연적으로 호안을 이루는 곳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고 하천구역의 준위에 따라 자연적 경관성이 적합한 호안 공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획적 수직단차를 유발을 지양하여야 함 - 종적인 수직단차를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자연친화적 기법 적용, 상위 규모 하천역과 합류되거나 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구역은 획적 시설물에 의한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수단 대안을 수립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포함/인접한 하천역의 경우 산림역과 연계된 호안은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형보전 구간을 설정, 반영하여야 함 ○ 현황조사 - 동·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 파악은 10년간 적용된 장기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사항이므로 하천개황 및 식생, 담(해)수생물상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동·식물상의 경우 소산식물 및 출현 동물상 목록을 작성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 명기 - 해안역에 인접한 하천역에 해당되는 바, 기수역의 범위와 소하성 어류 분포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하천 수지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여야 함 ○ 하천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 사업대상 하천 중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이 연계 	<p>되어 있는바, 수변적생 원형보존, 보/낙차공 절거 등의 사업계획과 함께 실현 가능한 보전대책을 별도로 수립·제시하여야 함(해당구간에 유입 또는 연계된 중요 소하천 현황 및 개수계획을 생태자연도 도면에 표기하여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및 낙차공 등 시설물계획 - 낙차공 또는 보는 하천의 연속성과 생물의 분산능력 및 통수효율을 저해하므로 존치 및 제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 및 존치목적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이를 지양하여야 함 - 면밀한 검토를 시행하여 노후 되었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낙차공은 절거하여 유수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인공적 구조물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하천 연속체 기능을 저해하는 획적 구조물 계획의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공간역(총량 내용 참고) 내 보 및 낙차공 절거 방안 및 평가결과 제시 - 1km당 1개 이하의 규모로 계획 수립을 적극 고려하여 존치 및 제거성을 최소화한 결과 제시 - 여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보 및 낙차공 현황사진 및 시설물 대비 여도설치 비율 제시 - 존치 및 확장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절거 및 축소 조정안(절거 비율 명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가능 대상 시설물 개수 분석, 제시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유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하천역에는 하상의 준위를 낮추고 소(림)를 형성하여 증류로 인공적 구조물의 보강 및 제거성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 - 확보강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여도 등 유수생물상의 분포구배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 ○ 하천계획빈도 - 사업대상 하천과 인접한 토지의 이용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 하천설계 빈도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고안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평가 - 현재 국가하천(100~200년 빈도), 지방하천(50~100년 빈도), 소하천(30~100년 빈도) 등 하천등급별 설계빈도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상 하천의 규모(유역면적 및 하천연장) 및 홍수량을 고려 ○ 하천시설물 정비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정량적인 처리계획 수립 - 폐기물의 자연순환성 향상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성상, 종류, 양을 사전에 예측하여 발생원에서 분리·배출 및 수집·보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2/5)</p>	<p style="text-align: center;">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3/5)</p>

(그림 6-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본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p>- 따라서 증설/재설치, 철거 계획이 확정된 교량, 낙차공 및 모 등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 종류별로 산정하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참고하여 위탁처리에 따른 소각, 매립, 재활용량을 정량적으로 계획하여야 함</p> <p>○ 수질개선 대책</p> <p>- 하천의 수질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중·내린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참조하여 목표수질 설정 후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및 대책(오염 정제구역의 해소, 완충공간 확보 등)을 수립하여야 함</p> <p>○ 재해예방 및 정비우선순위 선정</p> <p>- 계획구간 중 풍수해위험지구, 수질오염관리 필요 지역, 인구밀집지역 등과 인접한 하천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환경적 민감지역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 수해피해 발생 당시의 홍수량 및 홍수위, 피해 범위와 규모, 기존 호안상태 등을 조사하고,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 하천재해복구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p> <p>○ 항목 추가</p> <p>- 인구주거 항목 추가하여야 함(“4. 주민의견 수립” 참조)</p> <p>4. 약시평가 신청가능</p> <p>○ 해당 없음</p> <p>5. 주민의견 수립: 의견없음(), 수정의견(V)</p> <p>○ 지역 지식을 활용한 계획 수립</p> <p>- 본 계획은 치수가능 향상의 일환으로 홍수소용을 계획할 수 있으므로 계획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과거 홍수로 인한 수해 관련 고유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p> <p>- 따라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서면조사 혹은 면담을 통해 수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지식을 조사하고 이것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p> <p>6. 기타: 의견없음(), 수정의견(V)</p> <p>○ 하천관제 재취재 계획 여부 평가 및 반영</p> <p>- 본 권역의 하천기본계획 운영 기간 중 계획된 하천관제 및 수변관제 수급계획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 기 허가된 하천관제 재취재 관한 사항(구간, 재취량, 재취기간 등)을 비교 가능도록 연도별 현황을 명시</p> <p>- 국가 및 광역지자체 관제수급계획을 고려한 향후 계획 명시</p>	<p>○ 평가 및 분석 자료의 가독성 확보</p> <p>- 각종 필요한 도면(조사지점 및 경로, 식생도, 집수역 수계분포 현황,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도, 중요종 출현분포도 등)은 획득 가능한 가장 상세한 지형도 및 토지이용계획도에 투영기를 이용하여 명확히 줄임·표기하되, 각 지점에 대해서는 좌표를 명시하여야 함(가독성을 확보할 것)</p> <p>□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대면심의(), 서면심의(V)</p> <p>심의위원 : 노 [REDACTED]</p>
<p>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4/5)</p>	<p>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5/5)</p>
<p>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 총괄의견</p> <p>○ 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계획이 전반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래의 몇 가지 의견에 대하여 검토 바람</p> <p>□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비교적 적절히 설정되었으나 아래의 항목 추가가 필요 없었는지 검토 바람</p> <p>- (p1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주민지역 영향반경 300m 이내로 수정검토</p> <p>- (p11) 환경기준부합성 항목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토양오염 예상지역 추가여부 검토</p> <p>- (p11)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가여부 검토</p> <p>2. 대안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 (p41) 현상태 유지시와 계획수립시로 구분하여 수유·공급 대안 비교검토</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 <표 5-2>와 <표 5-3> 항목 불일치</p> <p>- (p49) 환경기준부합성 항목 중 토양 추가 필요시 본 항목별 조사·예측에도 ‘토양’ 추가</p> <p>- (p49)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중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가 필요시 본 항목별 조사·예측에도 ‘온실가스’ 추가</p> <p>4. 약시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6. 기타</p> <p>○ 의견없음</p> <p>□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2021. 3. 5.</p> <p>심의위원 : 박 [REDACTED]</p>
<p>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1/2)</p>	<p>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2/2)</p>

(그림 6-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본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 총괄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정비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주요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설정에서는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에 관한 문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각 중점 평가항목에 관한 현황,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p>□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검토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생태계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인 등-식물상은 각 계획하천의 하류하천과의 합류부 또는 목한강 합류부근 (약 100m 정도) 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황단방향 주변지역 150m 포함). 2. 토지이용계획(대안)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식물상 조사는 4개월을 반영하는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2회 현지조사 계획) 문헌조사를 충실히 시행하여야 함. - 수질조사는 44개 지점/6개하천에 3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는 바, 하천의 갈수기, 저수기 및 평수기에 유량을 측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 - 도입되는 호안공은 미생물의 이동이 용이한 공법인지의 검토가 필요함. - 공사시 예상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방안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 수정의견 ()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준비서에 대한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p>□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right;">2021. 3. 12.</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인 [redacted] (인)</p>
<p>협의기관장 지명 민간전문가(1/2)</p>	<p>협의기관장 지명 민간전문가(2/2)</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 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 총괄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댐-의암댐 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을 작성하여야 함. ○ 계획수립으로 인한 계획지구 및 주변에 대한 자연생태,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p>□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항목에 따른 평가대상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 조사범위 기준으로 변경 설정하시기 바람. 2. 토지이용계획(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의 구체적인 시설물 개선 및 보강계획의 변경을 알아 보기 쉽게 작성·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제3호에 따라 대상 지역의 축적 13,000 내지 125,000도에 토지이용 구상안을 제시하시기 바람.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항목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라 각 항목별 조사시기를 고려하여 현지조사 횟수를 조정하시기 바람. ○ 하천수질(지점) 조사지점 선정의 타당성 및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식평가 대상계획 비해당.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초안 공람 및 설명회(공청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 조사내용에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내용과 밀접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원래 도래 현황사항을 포함하시기 바람. ○ 사업시행에 따른 대상지역의 지형·지질현황 및 특이 지형 등의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하시기 바람. ○ 「환경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9조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전 수질오염총량검토서를 첨부하여 춘천시 환경정책과로 지역개발부하량 할당협의 요청(문서)을 하여야 함. ※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8조에 의거 원주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의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승인) 이후에 사업추진 가능 <p>□ 최종 평가협의회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right;">2021. 3. .</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박 [redacted]</p>
<p>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①(1/2)</p>	<p>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①(2/2)</p>

(그림 6-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본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 다목적댐 평가대상지역에 추가</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 다목적댐 공민 계획에 포함시켰으면 함. 다목적댐은 다목적 수의봉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 상서면 봉오리 파도천 유안으로 유입되는 14.2km의 지방2급 하천으로 공민 계획 대상인 파도천과 회천천의 상류에 위치함. 2001년 회천천의 기본계획 수립 후 20여년이 지났음. 연계된 다목적, 파도천, 회천천 3개 하천에 대한 통합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p> <p>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6. 기 타 ○</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의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right;">2021. 3. 5. 심의위원 : 정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가평천의 경우 하천이용 행태역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수질조사시 계절별 특성을 반영하기 바람</p> <p>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6. 기 타 ○</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의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right;">2021. 3. . 심의위원 : 권 [인]</p>
<p>관할 자치구 소속 공무원②</p>	<p>관할 자치구 소속 공무원③</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6. 기 타 ○ <i>선호권한 평가내용은 인하여, 조라나 민생부의 서장이 되어가겠습니다. 국장비록 인하여 강안도를 재검토해야겠습니다.</i></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의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right;">2021. 3. . 심의위원 : 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 ○ 동일권역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기본정비계획과 연계검토 요망</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수리,수문 : 과거 홍수기록, 재해비해기록(침수,범람,제방붕괴등) 검토제시 방법 : 기상관측, 재난보고서,문헌등 범위 : 하천별 과거10년이상</p> <p>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6. 기 타 ○</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의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right;">2021. 3. 5. 심의위원 : 정 [인]</p>
<p>주민대표①</p>	<p>주민대표②</p>

(그림 6-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본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 사유 : 기존 제방위주의 선적인 홍수방어 개념을 유역전체 차원의 면적 홍수 방어개념을 전환하기 위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필요성 제기됨. ○ 위치 : - 홍수 피해의 발생이 연속적 반복되는 구간. - 하천의 급류지역이나, 곡선 반경이 큰 플링 게이트 곡면. ○ 대안 - 하천의 한 단면에서 물이 수로의 벽면과 접촉하는 길이 운변을 넓게 하여 홍수 피해의 발생이 연속적 반복되는 구간의 홍수 단면을 키워 유속을 줄여주는 방안 검토. - 환경 피해와 파괴의 최소화. -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홍수단면 확보를 위한 도지의 친환경 면적 확보.</p> <p>3.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p> <p>6. 기타 ○ - 하천 사업은 유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되어야하며 특히 하천의 기본적인 유량과 홍수에 대비한 충분한 유변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 사후복구 의무로 책정되어 있는 재해예산을 예방투자 분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필요. - 수해 예방사업의 투자는 사후복구 사업에 비해 몇 배의 사업 효과가 있으므로, 하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의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3. 12</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대표③(1/2)</p>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대표③(2/2)</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 의견 (사업명 : 춘천댐 ~ 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검토 및 하천퇴적지에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여 수립을 검토요.</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0) ○ 홍수시 침수지역에 대한 지역 포함 검토(강우강도,빈도)</p> <p>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0), 수정의견() ○</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0) ○ 토사 퇴적지 및 침수면 퇴적에 대한 평가 검토</p> <p>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0) ○ 종합적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향요소 제시 필요</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0) ○ 자세하고 세부적인 주민 의견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민의 하천기본 계획 수립을 이해가 필요</p> <p>6. 기 타 ○</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의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0)</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3. 10</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이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명 : 춘천댐-의암댐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p> <p><input type="checkbox"/> 총괄의견</p> <p>○ 평가준비서 상의 큰 틀이 조정없이 진행 가능하다 판단됨 일부 수정사항은 잘 반영되어 종합적으로 피합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검토의견</p> <p>1.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수정의견(✓) ○ 대안지역내 곡사 및 기타오강변에 대한 설정 기준 보강요함 (※ 제방지역내 분도해상 저지 기술(슬라프))</p> <p>2. 토지이용계획안(대안)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수정의견(✓) ○ 각하저지 복원용 침수지침에 대한 환경적사항에 대한 기준 필요 (※ 저하지의 위험량 관측 지점 및 산 등립된 저지 기준이 필요)</p> <p>4. 약식평가 가능여부 : 의견없음(✓), 수정의견() ○</p>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수정의견() ○ 하천권, 하천권, 안동권 등 지역 방문결과 원주민등은 기본계획과 같은 계획의 진행 등에 아무 지식 안감속 필요</p> <p>6. 기 타 ○ 원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요망</p> <p><input type="checkbox"/> 최종 평가협의의 심의·의결 방법 : 대면심의(), 서면심의(✓)</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3. 12</p> <p style="text-align: right;">심의위원 : 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민단체 ①</p>	<p style="text-align: center;">시민단체 ②</p>

(그림 6-2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사본